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2010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인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
국적	(국적 코드 :)
근무기간	감면기간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 변동 □ ※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연령 구분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부처	경로 우대	출산 · 입양	장애 인		6세이 하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신용 카드 등	직불 카드 등	현금 영수증	
I. 인적공제 및 소득 공제 명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인원을기재 (다자녀 : 명)						국세청								
									기타								
	0		C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I.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2
배우자 (소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 · 임양자) (소법 §50 ③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50 ③ 나)	5*
형제자매 (소법 §50 ③ 다)	6	수급자(코드 1~6 제외) (소법 §50 ③ 라)	7	위탁아동 (소법 §50 ③ 마)	8

※ 참고사항

1. 관계코드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관계코드 4~6 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2. 연령기준

가. 경로우대 : (). 12. 31.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 10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1. 1. 이후 출생 (만 6세 이하: 100만원 공제)

3. 부녀자 공제란에는 여성근로소득자 본인에 한해 적용여부를 표시합니다.

4. 내 ·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기재하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5. 다자녀란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자녀수를 적습니다.

6. 신용카드 등에는 학원비 치료납부액이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직불카드 등에는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I.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중(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중(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퇴직연금	중(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주(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연금보험료 계					
III. 특 별 공 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요양보험포함)	중(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중(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의료비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비·학원비등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 (명)		공납금		1인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명)		공납금		1인당 9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월세액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 제외)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법정 기부금		기부금액			
		특례기부금(공익법인신탁 제외)		기부금액			
		공익법인신탁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공제액 계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V. 그 밖의 소득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연금저축공제 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저축액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공제	2008년 이전 출자·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09년 이후 출자·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공제 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②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④ 학원비 지로납부			
		계(①+②+③+④)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①납입 1년차		공제액=	
		②납입 2년차		(①×20%+②×10%+	
		③납입 3년차		③×5%)	
		납입합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		작성방법참조	
	기 타()				

V.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 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차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VI.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x로 적습니다)				제출 ()
2. 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종(전) 결정세액	
3.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또는 x로 적습니다)			제출 ()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② 기부금명세서 (), ③ 소득공제 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참고사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공제금액액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